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5,795,917	8,273,878
일반회계	227,663,895	6,829,917
특별회계	48,132,022	1,443,961
공기업특별회계	22,576,259	677,288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2,576,259	677,288
기타특별회계	25,555,763	766,673
수질개선 특별회계	9,921,452	297,644
주택사업 특별회계	11,046,498	331,395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27,302	24,819
자활기금 특별회계	1,339,411	40,182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978,051	29,342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31,190	27,936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369,631	11,089
기반시설 특별회계	30,359	911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11,869	3,35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90,01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후 국가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성립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채무상환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